

 국토해양부 <small>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</small>	보도자료	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	배포 일시	2012. 5. 21(월) 총 5매(본문 2, 붙임 3)	
담당 부서 건축기획과	담당 자	• 과장 정태화, 서기관 김동현, 주무관 김원섭 • ☎ (02) 2110-6209, 6210	
보도 일시	2012년 5월 22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22(화) 08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제수준의 건축사 자격제도 선진화 본격 시행

- 「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」 국무회의 통과 -

□ 국토해양부(장관: 권도엽)는 국가간 FTA 체결 등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편*하는 내용으로 「건축사법」이 개정(11. 5. 30. 공포, '12. 5. 31. 시행) 됨에 따라,

○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「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」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.

* ① 5년이상 인증된 대학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②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 ③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④ 자격등록을 한 후 ⑤ 계속교육을 통해 ⑥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 나갈 것

□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「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」은 건축사 자격 시험 응시요건, (갱신)등록 절차, 건축사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및 실무수련기간

-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도록 함.

- * 예외적으로 인증받지 못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에는 2023년까지 건축사사무소에서 **4년간 실무수련**을 받으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

- 갱신등록의 기간 및 절차

-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건축사는 **5년마다 실무교육**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**등록을 갱신**하여야 하며, 장관은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.

- 건축사 실무교육

-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려면 **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**을 받도록 함.

-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·운영

-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며,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**국토해양부장관**(시·도의 경우는 시·도지사)의 **요구에 따라 징계를 의결**하도록 함.

-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건축사 자격제도가 오는 **5월 31일**부터 본격 시행되면 경쟁력있는 자격제도를 갖추므로써 향후 **국제 건축설계 시장 개방**에 대비할 수 있고, 국내 건축사가 **해외에서 활동**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

[붙임] 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주요 개정내용(요약)

「건축사법 시행령」 주요 개정내용(요약)

□ 실무수련

- **(실무수련 기간별 자격 취득요건)** ① 실무수련기간이 3년인 사람:
인증 5년제 건축대학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, 건축학 전공학사로 인증 건축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, 건축학 비전공학사로 인증 건축대학원 4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, 이 영 시행(12. 5. 31) 전에 「한국 건축학교육인증원」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
- ② 실무수련기간이 4년인 사람(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하는 경우만 해당):
비인증 5년제 건축대학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, 건축학 전공학사로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, 건축학 비전공학사로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96학점 이상인 대학원 4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, 건축학 전공 학사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
- **(실무수련 장소)** 건축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건축사무소
- **(실무수련 영역별 최소 수련일수)** 설계 365일 이상, 공사관리 80일 이상, 기타 20일 이상
- * 나머지 일수는 실무수련자가 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
- **(감독건축사)** 건축사사무소개설자, 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소속 등록 건축사

- **(실무수련 확인)** 실무수련을 받은 사실은 실무수련자가 요청하면 감독건축사가 '실무수련확인서'를 발급하고,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수련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'실무수련완료증명서'를 발급하도록 함.

□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

- **(자격등록 신청서류)** ① 건축사 자격증 사본 ② 윤리선언서 ③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- **(갱신등록 절차)** 등록된 건축사는 5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, 장관은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.

□ 건축사 실무교육

- **(교육시간)**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. 다만,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자격등록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는 총 60시간 중 교육을 받지 않은 시간을 받아야 하며, 자격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난 건축사와 건축사 자격취득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건축사는 각각 12시간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.
- **(실무교육 계획수립)** 실무교육계획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서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.

□ 건축사징계위원회

- **(징계위원회 위원)**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(공무원 2명, 건축사 2명, 건축학과 교수 2명,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건축사 또는 건축학과 교수 중 2명)으로 구성(총 9명)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함.

- **(제척, 기피 및 회피)**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는 징계위원에 대해서는 제척, 기피 및 회피할 수 있도록 함.
- **(징계위원회 소집, 의결기한, 의결정족수)** 징계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(시·도의 경우 시·도지사)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, 의결기한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며, 징계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함.
- **(이의신청 처리)** 시·도지사의 징계결정에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장관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.
- **(시·도 건축사징계위원회)** 시·도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구성·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구성·운영하되, 따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함.